

항목: 교육직 직원

발행: //15

번호: **C-30**

제목: 학교장 및 교감 선발, 배정 및 임명에 관한 규정

페이지: 1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학교장 및 교감의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본 규정은 2014년 4월 10일자 규정 C-30을 대체한다.

변경내용:

-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 이후 실시되는 감독직 선발 절차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섹션 I
- 감독 지원 서비스 담당실(Office of Supervisory Support Services)에서 학교장 및 교감의 이전 교육경력 요건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다. 섹션 VII(D)(3)
- 보로 현장 사무실에서는 해당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에 관한 레벨 I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섹션 XI(B)(1)
- 커뮤니티 학군 내 채용을 위한 레벨 I 위원회에 참여하는 감독직 위원은 공석이 발생한 학교 또는 학군 내 다른 학교의 슈퍼바이저이어야 하나, 이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할 경우 해당 보로 내 학교의 슈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 섹션 XI(C)(1)
- 비커뮤니티 학군 채용을 위한 레벨 I 위원회에 참여하는 감독직 위원은 공석이 발생한 학교의 슈퍼바이저 또는 해당 보로 내 학교의 슈퍼바이저가 할 수 있다. 섹션 XI(E)(1)
- 레벨 I 위원회에서는 학군장 지명인이 클러스터 지명인을 대체할 수 있다. 섹션 XI(C)(1), XI (E)(1), XI(G)(3)(b)
-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하는 C-30 위원회 구성원은 선발절차에서 제외되며, 차후 C-30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섹션 XVII(B)
- 학교장 후보군이 형성된 2008년 2월 1일 이전에 임시 교장 대행으로 임명된 교장들은, 교장대행(지명 또는 임시)으로서 만족할만한 연례 평가를 받고, 뉴욕주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장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후보군에 포함된다. 이러한 교장들은 최소 7년의 교직경력이 갖추지 않은 한 학교장직에 지원할 수 없다. 섹션 VIII
- 거부권은 커뮤니티 교육장이 실시한 임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구절이 첨부되었다. 섹션 XI(A)(1)(a)
- 커뮤니티 교육장 교장 및 교감 임명에 대한 거부는 선임 부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교육감을 대신하여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표현은 제거하였다. 섹션 IX(A)(1)(a)